

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세부업무 처리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에 관한 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구소 설립요건) ①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간, 인력, 운영비, 연구비 확보계획 연구소 유형 등이 명확할 때 설립할 수 있다.

②학문중심연구소 설립은 15인 이상의 책임연구원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.

③주제연구소와 정책연구소 설립은 15인 이상의 교수연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조(책임연구원 소속) ①학문중심연구소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소 참여신청서를 희망하는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학문중심연구소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연구원이 다른 학문중심연구소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책임연구원 소속변경신청서를 소속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책임연구원 소속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결정하고, 변경을 희망하는 연구소 소장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④제1항에 의한 연구소 참여신청서 및 제3항에 의한 책임연구원 소속변경신청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참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, 승인자 명단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연구소의 역할) ①학문중심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책임연구원의 국제학술회의참가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등 연구활동 지원
2. 책임연구원이 제출하는 공모과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의 취합과 제출
3. 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업적 관리
4. 연구간접경비 회계관리
5. 기타 연구와 관련된 사항(연구비관리 제외)

②주제연구소 및 정책연구소는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소속 연구원이 제출하는 공모과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의 취합과 제출
2. 연구간접경비 회계관리
3. 기타 연구와 관련된 사항(연구비관리 제외)

제5조(연구소 운영비) ①연구소 운영경비는 연구소로 배분된 연구간접경비를 기본으로한다.

②기초학문 육성상 필요하거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연구소 재정자립이 어려운 연구소는 별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간접경비 배분) ①연구소 지원 연구간접경비는 책임연구원이 소속된 학문중심연구소에 지원한다.

②학문중심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 타 학문중심연구소 교수연구원으로 참여한 때에는 연구소별 참여비율 지정에 따라 배분할 수 있으나,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학문중심연구소에

50%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③주제연구소 및 정책연구소와 관련하여 연구비를 수주한 때에는 관련 연구소에 연구간접경비를 배분할 수 있다.

제7조 (연구간접경비의 사용) 연구간접경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되, 우수 연구자에 대한 장려금은 연구소 배분액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.

1. 공공요금
2.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, 운영비 등 제경비
3. 연구비 및 연구과제 개발에 필요한 경비
4. 학술행사 및 연구활동 지원비
5. 우수연구자에 대한 장려금(Incentive)
6. 기타 연구활성화 및 연구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

제8조 (연구간접경비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결산보고) ①연구간접경비의 회계년도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.

②연구소장은 자체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 연구간접경비 세입·세출예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, 결산서는 회계종료 후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연구간접경비회계의 예산편성·집행·예산과목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립대학(교)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.

④연구간접경비의 수입 및 집행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는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 (연구간접경비 예산의 이월) 회계년도 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연구간접경비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이자 발생액) 연구간접경비 관리 시 발생하는 이자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간접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.

제11조(연구소 평가) 규정 제12조에 의거한 연구소평가에서 우수연구소로 평가된 연구소에는 연구원 및 행정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참여연구원의 참여도 및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학술연구위원회와 학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통·폐합할 수 있다.

제12조 (기타 사항)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1호 서식)

연구소 참여신청서

○ 신청자 인적사항

- 소 속:

- 직 급:

- 성 명:

○ 본교 최초임용일:

상기 본인은 귀 연구소에 책임연구원로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신청자 : ○ ○ ○ (서명)

○○○○연구소 소장 귀하

(별지2호 서식)

책임연구원 소속변경신청서

- 현 소속 학문중심연구소명:
- 변경신청 학문중심연구소명:

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문중심연구소 소속을 변경하고자
소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소속변경사유 :

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신청자 : ○ ○ ○ (서명)

○○○○연구소 소장 귀하